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04.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은(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영문명 : JJU-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14.12.11.>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관리 <신설 2012.11.20, 개정 2012.12.11>
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 의료용품 및 재활용품 개조·수리·판매·대여 등 학교기업 관련한 사업 운영 및 관리 <신설 2012.12.11>
10. 농축산물인증,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등 학교기업 관련한 사업 운영 및 관리 <신설 2013.4.24.>
11. 전주대학교 슈퍼스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신설 2017.02.24.>
12.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5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명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총장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감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행정사무)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인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재산과 회계

제11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제12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기부금·보조금
3. 사업수익
4. 차입금 등

제13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학협력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당해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 및 실험·실습 시설이나 장비 등의 사용료
6.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 <신설 2012.11.20>
7. 기타 이자수입등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제14조(지출) 산학협력단은 그 수입으로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산학협력단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7.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2.11.20>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5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16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8조(회계기관) ① 단장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다만, 전주대학교 해당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비밀유지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산학협력단에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정관의 변경) 총장은 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전주대학교에 귀속한다.

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공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전주대학교신문,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기는 2004년 3월 1일로 한다.

제 2조(지적재산권의 이전)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